

case  
3

## 냉동 구운 장어

### 요약

사례명	냉동 구운 장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331 (2020.12.16.)
사실관계	미국 또는 유럽산 생물 장어 치어를 중국으로 수입하여 양식한 후, 등뼈를 따라 중앙을 절개하고 머리, 뼈, 내장, 지느러미 제거(껍질은 유지), 세척, 굽기, 찜, 냉동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냉동 구운 장어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에서의 가공을 통해 뼈와 골격 구조가 제거되었고 더 이상 물고기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며, 가공을 통해 원통형 구조를 지닌 장어가 납작하게 펼쳐진 생선 살의 형태가 되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sup>1)</sup>

### 사례명 [냉동 구운 장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1331 (2020.12.16.)

#### 사실관계

요청자 American Eel Depot, Corp. (대리인: Grunfeld, Desiderio, Lebowitz, Silverman & Klestadt, LLP)

제품명 냉동 구운 장어 (Frozen Roasted/Broiled Eel)

제품  
구성

- 미국산 장어 치어[American eel(Anguilla rostrata)]
- 유럽산 장어 치어[European eel(Anguilla anguilla)]

#### 제조공정



01  
장어 치어  
중국으로 수입



02  
양식



03  
냉동 구운  
장어로 가공



04  
미국 수출

#### 상세공정

- 미국 또는 유럽산 생물 장어 치어를 중국으로 수입
- 중국에서 양식
- 상업용 크기까지 양식한 후, 아래 공정 수행
  - 등뼈를 따라 중앙을 절개하고 머리, 뼈, 내장, 지느러미 제거(껍질은 유지)
  - 껍질과 살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세척 후 구움
  - 증기로 찜 처리
  - 소스를 더해 한 번 더 직화로 구움
  - 검사, 등급 분류, 포장 후 냉동하여 미국 수출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례: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701 F.Supp. 229, 235 (C.I.T. 1988)

**사례** 뉴질랜드산 생선(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상태)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해동, 껍질 제거, 뼈 제거, 다듬기, 재냉동 및 포장하는 공정을 거침

**판결** 해당 생선이 한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필레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가공된 이후 더 이상 생선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필레 자체가 원래의 생선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상업용 제품이 되었다고 판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R04129 (2006)*

**사례** 미국산 메기 치어(catfish fingerlings)가 중국에서 양식, 사육, 수확, 내장 제거, 껍질 제거, 냉동 및 포장되었으나 필레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판정** CBP는 껍질 제거 및 절단과 같은 공정은 기본적인 수준의 가공에 해당하며, 여전히 '통메기 (whole catfish)'라는 상업적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을 불인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R04074 (2006)*

**사례** 미국산 메기 치어(catfish fingerlings)가 중국에서 양식, 사육, 수확, 내장 제거, 껍질 제거, 냉동,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레 작업까지 수행됨

**판정** 중국에서 이루어진 필레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962 (2019)*

**사례** 장어는 중국에서 양식되고, 머리 제거, 지느러미 정리, 필레 작업까지 수행된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어 구이 및 소스 처리 과정을 거쳐 냉동 구운 장어로 가공

**판정** 필레 작업을 통해 장어는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되므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판정 결과

- 청구인은 필레 가공된 생선이란 '등뼈에 평행하게 절단되어 잘라낸 불규칙한 크기와 형태의 생선 살 조각으로 전체 생선과 닮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등뼈를 따라 절단되었을 뿐 막에 의해 전체 장어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CBP는 필레 방식과 본 사안의 방식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함

본 사안의 장어



필레 가공된 장어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뼈나 골격 구조는 제거되어 있고 더 이상 물고기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을 통해 원통형 구조를 지닌 장어는 납작하게 펼쳐진 생선 살의 형태가 되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 결론

- ✓ 중국에서 수행된 중앙 절개, 뼈 제거, 굽기 등의 복합 가공 공정은 장어의 성질, 형태, 상업적 정체성을 변경함
- ✓ 따라서 미국산 또는 유럽산 장어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II 시사점

- 가공된 어류의 실질적 변형 판단은 최종 제품이 어류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음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331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331>
- CBP Ruling NY R04129 (2006.06.15), <https://rulings.cbp.gov/ruling/R04129>
- CBP Ruling NY R04074 (2006.06.13), <https://rulings.cbp.gov/ruling/R04074>
- CBP Ruling NY N307962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N307962>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erica+v.+United+States>